

【붙임】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2008.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기능과 조직을 광역화하여 『알뜰한 강소조직』으로 거듭나고자 우리군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과 단위 개편(안 제3조, 제9조)

- 부서 존치

- 본청 : 9과(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경제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과)

- 농업기술센터 : 1과(기술지원과)

- 부서 통합 : 4과 ⇒ 2과(△2과)

- 본청 : 건설과 + 재난관리과 ⇒ 건설방재과
- 농업기술센터 : 농정과 + 축산과 ⇒ 농축산과

- 부서명칭 변경 : 1과

- 주민생활지원과 ⇒ 주민생활지원실(부서장 직급 구분)

※ ①기획감사실 ②주민생활지원실 ③민원봉사과 ④자치행정과 ⑤재무과 ⑥문화체육과 ⑦관광경제과 ⑧환경과 ⑨산림과 ⑩건설방재과 ⑪도시과

나. 부서간 업무 조정(안 제3조, 제9조)

-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 기획감사실 ⇒ 자치행정과

-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평생학습 관련 업무 :

자치행정과 ⇒ 기획감사실

-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 민원봉사과 ⇒ 환경과

- 레포츠 관련 업무 : 문화체육과 ⇒ 관광경제과
- 운수·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 건설과 ⇒ 민원봉사과
- 민방위 관련 업무 : 재난관리과 ⇒ 자치행정과
-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치수 관련 업무, 안전지도 관련 업무 : 재난관리과 ⇒ 건설방재과
-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 농정과 ⇒ 기술지원과
- 축산과 업무 전체 : 축산과 ⇒ 농축산과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8.6.20~6.29(10일간), 결과요약서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입법 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담당 및 직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과로의 이관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행정업무의 부서간 분장사무 조정이 잦아 소속 직원들의 사기저하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 타 부서 사무실 이용으로 소속감 결여 및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지남 - 조직의 이원체계로 인력관리가 어렵고 업무추진능을 저하 - 환경과로 이관시 법규위반자 전담 수사실 및 CCTV상황실 설치 지남 ◦ 조정안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건설과 존치 - 2안) 민원봉사과 	<p style="text-align: center;">반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과와 재난관리과 통합으로 교통행정업무 이관 불가피 ◦ 공간활용 및 민원처리 편리 등의 의견에 따라 민원봉사로 이관 반영(환경교통과 → 민원봉사과) ◦ 대과주의 지향 및 부서간 업무량 조정(민원봉사과 위생담당 ⇒ 환경과 위생담당)
<p>방림면이장협의회, 방림의용소방대, 계촌지역사회단체장, 주민(박영식, 조광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촌출장소는 9개리 1,5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고령화와 이동수단(버스)이 적어 각종 민원처리기간이 2일까지 걸릴 수 있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출장소 폐지 절대 반대(방림의용소방대) ◦ 방림면 인구의 70%상당이 계촌출장소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 정부의 조직개편 사유로 폐지를 기획한 자체는 방림면 주민을 우롱한 사건, 출장소 폐지 철회 건의 (방림면이장협의회, 사회단체장) ◦ 방림면은 인구나 정책사업등 여러면에서 타면에 비해 소외, 출장소 폐지는 행정서비스에서조차 버림을 받는 주민으로 만듦. 운교, 계촌의 인구나 민원 신청건수, 교통여건 등을 생각하면 출장소 폐지는 시기상조(주민 박영식) 	<p style="text-align: center;">반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의견 수용 ⇒ 계촌출장소 존치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림면 계촌, 운교리 주민은 평창군민이 아니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힘없는 면세 통탄. 출장소가 주민들의 민원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들 스스로가 건의하여 폐쇄하고자 하였을 것. 분노와 계촌주민들이 소외받고 있는 현실에 절망감 느낌. 인근 정선군과 영월군은 출장소 폐지 없음. 운행 버스 시간 제한으로 민원 해결에 많은 시간 소요됨. 출장소 폐쇄 후 민원의 불편함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됨. 현재도 농협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출장소를 2-3회 방문하여야하며, 하루가 다 소비되고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많음. 민원발급기의 작동 오류 및 지문 인식을 통한 민원발급기는 거친 농사일로 인한 노령자의 지문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흔함. 방림면 운교리, 계촌리 등 주민 1,600여명은 계촌출장소 존치를 강력히 희망(주민 조광수)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체육과·관광경제과·환경과·산림과·건설방재과·도시과를 둔다.

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

- 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평가
- 나.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다. 미래전략 정책개발
- 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 마. 예산편성 및 운용
- 바.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 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 아.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평생학습 관련 업무
- 자.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 차.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
- 카.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업무

2. 주민생활지원실

- 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
- 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
- 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
- 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
- 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
- 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
- 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
- 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

3. 민원봉사과

- 가.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
- 나. 부동산 관련 업무
- 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
- 라. 운수·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4. 자치행정과

- 가. 조직 및 인사관리
- 나.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
- 다.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
- 라.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
- 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포상에 관한 업무
- 바. 행사·의전 관련 업무
- 사. 보안업무 및 복무 관리
- 아.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
- 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업무
- 차.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
- 카.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
- 타. 통계 관련 업무
- 파. 민방위 관련 업무

5. 재무과

- 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
- 나.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 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된 업무
- 라.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
- 마.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

6. 문화체육과

- 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 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
- 다. 도서관 관련 업무
- 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
- 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 바. 청소년 관련 업무

7. 관광경제과

-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바. 레포트 관련 업무

8. 환경과

가. 환경행정 및 시설·지도·보호에 관한 업무

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

다. 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라.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마. 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 지하수에 관한 업무

바.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

9. 산림과

가.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나.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

다.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

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

10. 건설방재과

가. 도로·교량 관련 업무

나.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

다.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

라.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마.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

바.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

사. 치수 관련 업무

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

11. 도시과

가.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

나.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

다.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

라. 경관관리 및 광고물 관련 업무

마.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

바.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축산과

- 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
- 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
- 다.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 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 마.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
- 바.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
- 사.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아.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
- 자.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
- 차. 낙농초기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

2. 기술지원과

- 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
- 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 다.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
- 라. 지역특화작물 개발
- 마.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② 「평창군 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③ 「평창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④ 「평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⑤ 「평창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조제5항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한다.

⑥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⑦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⑧ 「평창군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⑨ 「평창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재난관리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건설방재과장,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⑩ 「평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⑪ 「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⑫ 「평창군농업기반시설물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다목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⑬ 「평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⑭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⑮ 「평창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⑯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

제3조(과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재된 실·과·소의 장의 사무는 신설된 실·과·소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①<u>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체육과·관광경제과·환경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재난관리과를 둔다.</u></p> <p>②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기획감사실</p> <p>가.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평가</p> <p>나.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p> <p>다. 미래전략 정책개발</p> <p>라.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p> <p>마. 예산편성 및 운용</p> <p>바.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p> <p>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p> <p><u>아.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u></p> <p>자.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p> <p>차. 공무원 비위조사 및 처리</p> <p>카. 법무 및 소송에 관한 업무</p>	<p>제3조(실·과의 설치) ①----- -----<u>기획감사실·주민생활지원실·민원봉사과·자치행정과·재무과·문화체육과·관광경제과·환경과·산림과·건설방재과·도시과를 둔다.</u></p> <p>②----- --.</p> <p>1. -----</p> <p>가. ----- -----</p> <p>나. ----- -----</p> <p>다. -----</p> <p>라. ----- -----</p> <p>마. -----</p> <p>바. -----</p> <p>사. -----</p> <p><u>아.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평생학습 관련 업무</u></p> <p>자. -----</p> <p>차. -----</p> <p>카. -----</p>

현행	개정안
<p>2. 주민생활지원과</p> <p>가.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에서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총괄 연계 관리</p> <p>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업무</p> <p>다.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및 제공 기관간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p> <p>라. 자원봉사에 관한 업무</p> <p>마. 자활사업 및 차상위계층,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업무</p> <p>바. 노인복지 및 고령화 대책 관련 업무</p> <p>사. 여성·아동·보육·모부자가정·출산장려에 관한 업무</p> <p>아. 주민불편 생활민원 관련 업무</p>	<p>2. 주민생활지원실</p> <p>가. -----</p> <p>-----</p> <p>-----</p> <p>나. -----</p> <p>-----</p> <p>다. -----</p> <p>-----</p> <p>-----</p> <p>라. -----</p> <p>마. -----</p> <p>-----</p> <p>바. -----</p> <p>-----</p> <p>사. -----</p> <p>-----</p> <p>아. -----</p>
<p>3. 민원봉사과</p> <p>가. 민원사무에 관한 업무</p> <p>나. 부동산 관련 업무</p> <p>다. 지적 및 새주소 관련 업무</p> <p>라.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p>	<p>3.-----</p> <p>가. -----</p> <p>나. -----</p> <p>다. -----</p> <p>라. 운수·교통행정에 관한 업무</p>
<p>4. 자치행정과</p> <p>가. 조직 및 인사관리</p> <p>나. 사회진흥에 관련된 업무</p> <p>다. 행정구역 조정 및 관리</p> <p>라.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 및 행정지원</p>	<p>4. -----</p> <p>가. -----</p> <p>나. -----</p> <p>다. -----</p> <p>라. -----</p> <p>-----</p>

현 행	개 정 안
<p>마. 공무원 후생복지 및 교육, 포상에 관한 업무</p>	<p>마. ----- -----</p>
<p>바. 행사·의전 관련 업무</p>	<p>바. -----</p>
<p>사. 보안업무 및 복무 관리</p>	<p>사. -----</p>
<p>아.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수발</p>	<p>아. -----</p>
<p>자. 공무원 및 비정규직 노조에 관 한 업무</p>	<p>자. ----- -----</p>
<p>차. 혁신분권 및 공교육지원 관련 업무</p>	<p>차. 공보행정 및 군정홍보 관련 업무</p>
<p>카. 전산 및 통신 관련 업무</p>	<p>카. -----</p>
<p>타. 통계 관련 업무</p>	<p>타. -----</p>
<p><u><신 설></u></p>	<p><u>과. 민방위 관련 업무</u></p>
<p>5. 재무과</p>	<p>5. ----</p>
<p>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업무</p>	<p>가. -----</p>
<p>나. 세출예산 집행 및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p>	<p>나. ----- -----</p>
<p>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 된 업무</p>	<p>다. ----- -----</p>
<p>라.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업무</p>	<p>라. -----</p>
<p>마. 재무행정에 관련된 업무</p>	<p>마. -----</p>
<p>6. 문화체육과</p>	<p>6. -----</p>
<p>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p>	<p>가. -----</p>
<p>나. 향토문화발굴 및 문화재 보호 관련 업무</p>	<p>나. ----- ---</p>
<p>다. 도서관 관련 업무</p>	<p>다. -----</p>
<p>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업무</p>	<p>라. -----</p>
<p>마.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p>	<p>마. -----</p>
<p>바. 청소년 관련 업무</p>	<p>바. -----</p>
<p>사. 레포츠 관련 업무</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7. 관광경제과 가. 관광 기획 및 홍보·행사 등에 관한 업무 나. 관광개발 및 관광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다. 지역경제 및 상공에 관한 업무 라. 에너지 관련 업무 마. 기업지원 및 지원에 관한 업무 <u><신 설></u></p>	<p>7. ----- 가. ----- -- 나. ----- -- 다. ----- 라. ----- 마. ----- <u>바. 레포즈 관련 업무</u></p>
<p>8. 환경과 가. <u>환경행정 및 시설·지도·보호에 관한 업무</u> 나. <u>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u> 다. <u>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라. <u>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 지하수에 관한 업무</u> 마. <u>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u></p>	<p>8. ---- 가.----- ---- 나. <u>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u> 다. <u>폐기물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u> 라. <u>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u> 마. <u>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 지하수에 관한 업무</u> 바. <u>야생 동·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구제, 수렵에 관한 업무</u></p>
<p>9. 산림과 가. 산지이용 및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 나.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업무 다. 산림행정 및 임업경영에 관한 업무 라. 백두대간보호 관련 업무</p>	<p>9. ---- 가. ----- 나. ----- 다. ----- 라. -----</p>

현행	개정안
<p>10. 건설과</p> <p>가. 운수·교통행정에 관한 업무</p> <p>나. 도로·교량 관련 업무</p> <p>다.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p> <p>라.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p> <p>마.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p> <p>11. 도시과</p> <p>가. 국토 자연자원의 보존 이용개발</p> <p>나. 도시건설에 관한 모든 업무</p> <p>다. 토지수용 및 택지개발 업무</p> <p>라. 경관관리 및 광고물 관련 업무</p> <p>마.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p> <p>바. 주택 및 건축 관련 업무</p> <p>12. 재난관리과</p> <p>가.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p> <p>나.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p> <p>다. 치수 관련 업무</p> <p>라. 민방위 관련 업무</p> <p>마. 안전지도 관련 업무</p>	<p>10. 건설방재과</p> <p>가. 도로·교량 관련 업무</p> <p>나.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관련 업무</p> <p>다. 정주권 개발 및 토목공사 관련 업무</p> <p>라.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p> <p>마. 지역단위 재난·재해 관련 업무</p> <p>바. 방재(복구지원) 관련 업무</p> <p>사. 치수 관련 업무</p> <p>아. 안전지도 관련 업무</p> <p>11. ----</p> <p>가. -----</p> <p>나. -----</p> <p>다. -----</p> <p>라. -----</p> <p>마. -----</p> <p>바. -----</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제9조(소관사무)(생략)</p> <p>1. 농정과</p> <p>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p> <p>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p> <p>다.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p> <p>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p> <p>마.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p> <p>바.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p> <p>사.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p> <p>2. 축산과</p> <p>가.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p> <p>나.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p> <p>다.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p> <p>라. 낙농초기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p> <p>3. 기술지원과</p> <p>가. 농촌지도 및 일반농업에 관한 업무</p> <p>나. 원예 특용작물에 관한 업무 <신설></p> <p>라. 지역특화작물 개발</p> <p>마. 영농기계화,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p>	<p>제9조(소관사무)(현행과 같음)</p> <p>1. 농축산과</p> <p>가. 농업정책에 관한 업무</p> <p>나. 농촌개발에 관한 업무</p> <p>다. 농산물 유통 및 정부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p> <p>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p> <p>마.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업무</p> <p>바. 서울사무소 운영 관리</p> <p>사. 축산행정의 종합계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p> <p>아. 가축개량 및 축산물의 유통관련 업무</p> <p>자. 내수면 및 수산제조업 관련 업무</p> <p>차. 낙농초기 및 가축위생 관련 업무</p> <p>2. -----</p> <p>가. -----</p> <p>나. -----</p> <p>다. 농민 교육 및 농업관련 단체 육성 지도</p> <p>라. -----</p> <p>마. -----</p>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이하생략)

②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생략)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